

제주영상 · 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제정 2017. 11. 2.

개정 2018. 6. 15.

개정 2019. 5. 29.

개정 2023. 3. 30.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18.6.15.>

제2조(목적) 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라 한다)의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제주지역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하고 영상·문화산업 확대를 통하여 제주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6.15.>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진흥원의 사무소는 제주시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상·문화산업 정책 연구 및 개발 <개정 2018.06.15.>
2. 영상·문화산업 개발을 위한 제주문화원형 발굴 및 보존 <개정 2018.06.15.>
3. 영상·문화 기획자 육성 및 지원 <개정 2018.06.15.>
4. 영상·문화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 <개정 2018.06.15.>
5. 영상·문화 상품 유통 지원 <개정 2018.06.15.>
6. 삭제 <개정 2018.06.15.>
7.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8. 아시아CGI(Computer Generated Imagery)애니메이션센터 운영 <개정 2018.06.15.>
9. 국가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8.06.15.>
10. 정부 등 공모사업 참여 및 기업 참여 지원
11. 그 밖의 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8.06.15.>

제5조(수익사업) ① 진흥원은 사업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임 원

제6조(임원의 구성) ① 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 포함)
4. 감사 2인

②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등) ① 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회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 <개정 2019.5.29.>

<개정 2023. 3.30.>

1.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개정 2023. 3.30.>
2. 원장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업무 관련 국장
4. 제주시 문화콘텐츠업무 관련 국장
5. 서귀포시 문화콘텐츠업무 관련 국장

③ 원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 승인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선임직 이사는 영상·문화산업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공개 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선임직과 당연직 각 1인씩을 두며, 선임직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공개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선임된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후임자는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⑦ 임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5.29.><전면개정 2023.3.3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9.5.29.>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진흥원에 비상임 위원회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임원 공개모집을 하여 공개모집된 신청자들 중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후보자군을 이사장에게 추천한다.

③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진흥원의 임원 선임업무를 담당하는 당해 팀장이 된다.
- ⑥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관련하여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과 「지방공기업법인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진흥원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직을 상실할 때에는 그 직의 후임자가 승계한다. 다만 궐위 시에는 그 직의 업무대행자가 승계한다.

- ② 원장, 선임직 이사,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고의 또는 과실로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진흥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 기타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제1호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을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19.5.29.>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유고시 업무대행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6.15.>

- ② 원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원장이 궐위 시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직제규정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진흥원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3 장 이 사 회

제1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장은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7일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6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1. 진흥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진흥원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진흥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기구 등 재단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18조(회의록) 진흥원은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 중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등)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외의 서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정관
2. 임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이사회 회의록
4.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자산대장
6. 관계기관과의 관련서류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장부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주영상위원회 설치) 진흥원은 로케이션 지원, 영상문화산업 지원, 영상 제작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를 둔다.

제21조(구성 및 운영) 제주영상위원회 위원장은 진흥원장이 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조 직

제22조(직제 및 정원) 진흥원의 직제 및 정원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30.>

제23조(직원) ① 진흥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진흥원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달성과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원장은 진흥원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을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산)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주특별자치도 및 민간이 출연한 재산
3. 진흥원의 목적사업에 수행되는 부동산
4.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④ 재단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⑤ 재산은 그 목적을 작성하여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예금의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3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재원) ① 진흥원의 사업비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재산과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매 회계연도 운영재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민간이 출연한 기본재산을 제외한 여타의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운영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회계원칙) 진흥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원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진흥원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의 기본재산을 매입,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재산의 평가) 진흥원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2조(사업계획 등의 작성) ① 진흥원은 매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매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납폐쇄기간 종료 후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5조(보수) ① 진흥원의 원장 및 직원에 대한 보수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 등 진흥원 업무 지원을 위하여 대외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는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② 비상임 임원 및 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진흥원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7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법인의 해산)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진흥원 해산 시 잔여재산은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출연한다.

제40조(준용법령)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1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이 진흥원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

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2조(공고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진흥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43조(시행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22조, 제27조 제2항, 제35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재단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진흥원 설립 당시 초대 원장, 선임직 이사, 선임직 감사 등은 공개모집을 거쳐 주무관청에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진흥원 설립 지연으로 진흥원에 고용승계되는 기존 (사)제주영상위원회 직원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이후 미지급된 인건비 등 보수를 진흥원 예산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조(설립당시 임원의 임기) 재단 설립 시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시작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2018. 6.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종전의 「재단법인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정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정관에 따른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2019. 5.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구 분	금 액	비 고
현 금	금500,000,000원	
부 동 산		

<별표 2>

설립당시의 발기인 명부

연 번	성 명	주 요 약 력
1	송윤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제주영상위원회 이사
2	전정환	제주창조경제센터장
3	현을생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장
4	오태헌	(주)아트피큐 대표
5	김동만	제주한라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6	이동철	제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7	김홍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